

「평창군 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·상속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23년 11월 16일, 평창군수 제출
- 회부일자: 2023년 11월 27일 회부
- 상정일자: 제290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
(2023년 12월 6일 상정·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: 안전교통과장)

가. 제안이유

-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」 제40조제1항 및 별표 2의 사업용 자동차의 차령과 그 연장요건에 관해 「평창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」를 제정하며 조례 본문과 [별표]에 그 내용을 명시하려 하므로 본 조례에 있는 내용은 삭제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항 삭제(안 제3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: 김영옥)

※ 검토보고서 전문 [붙임 1]

4. 질의 및 답변 요지: 「생략」

5. 토론 요지: 「없음」

6. 심사 결과: 「원안가결」

7. 소수의견 요지: 「없음」

8. 기타 사항: 「없음」

- 붙임 1. 평창군 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·상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검토보고서 1부.
2. 평창군 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·상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1부. 끝.